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1168호 2023. 9. 20. (수)

고 시

제2023-1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50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공 고

제2023-11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제2023-11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

제2023-110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5

제2023-1108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37

_						
	공					
	- 1)					
	람					

발행 : 부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래전략실 (☎309-5411)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1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50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 1.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117호(2018.10.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92호(2019.10.16.)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59호(2023.05.1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50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사업의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산225-4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 1류 50호선)	
사업의 명칭	화명동 산성로 교량개설사업	
사업규모	교량개설 L=40m, B=10m	
사업시행자의 성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사업기간	○ 사업착공 예정일: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준공 예정일: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 조서

번호	동	지 번	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	권 이외의 군	빌리	비고
 	6	시인	목	(m²)	(m²)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내용	0) 12
1	북구 화명동	산53-17	미	94	94	구옥진	부산시 북구 화명동 1470-16				175553/ 25202000 (지분)
1-1	II	П	Ш			윤대운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48-1				22.5/3150 (지분)

_											
1-2	II II	П	Ш			윤정웅	부산광역시 동래구 망미동 799-3				1/35(지분)
1-3	П	п	II			부산광 역시 북구					1795351312 79164/ 1927162669 81465(지분)
2	북구 화명동	산53-18	O	162	162	강정화	부산 동래구 거제동 38-45 경남아파트 6동 603호	황응규	부산 동래구 복천동 503-8	가압 류	5611901853 49794/ 1069576351 32348000 (지분)
	Ш	П	Ш					가락 세무서		압류	
	11	II	II					금정 세무서		압류	
	II	П	Ш					금정 구청		압류	
	11	П	=					양산시		압류	
	11	11	П					근로복 지공단 부산동 래지사		압류	
2-1	п	11	п			강칠규	부산 북구 모라동 1361 동원아파트 102-1103호	김해시		압류	2805293104 61400 /106957635 132348000 (지분)
	п	П	11					국(부 산지방 검찰청)		압류	
2-2	п	П	=			강현욱	부산 서구 토성동 1가 6				2350717255 65600 /106957635 132348000 (지분)
2-3	п	II	ш			강현진	부산 서구 토성동 1가 6				2350717255 65600/1069 5763513234 8000 (지분)
2-4	п	п	п			공태임	부산 북구 화명동 1429-1 국일아파트 106호				3446139184 48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5	п	п	ш			곽영자	부산 북구 모라동 1360-1				2407544133 71472/1069 5763513234 8000 (지분)
2-6	п	II	ш			구옥진	부산 북구 화명동 1470-16				7450493500 67022/1069 5763513234 8000 (지분)
2-7	п	11	=			권문섭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2-401				2182808880 25200/1069 5763513234 8000 (지분)
2-8	п	II	П			권순자	부산 남구 대연동 1750-7				2182808880 25200/1069 5763513234 8000 (지분)
2-9	п	II	II			김도근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202번길 56, 501호(감전동)				1231854705 999110/106 9576351323 48000 (지분)

2-10	II	II	II		김말절	부산 해운대구 중동 1215				7015354768 42200/1069 5763513234 8000 (지분)
2-11	П	П	II		김방구	영주시 적서동 185				3663455463 36000/1069 5763513234 8000 (지분)
2-12	п	II	ш		김상영	부산 사상구 모라동 686-12	북부산 세무서		압류	3085398013 69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3	П	П	=		김석순	부산 남구 문현동 390-70				4910408816 79348/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4	п	П	ш		김성희	부천시 중구 원종동 298-2 한산연립 3-104호				9820647873 036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5	п	II	=		김세성	창원시 사파동 97브록 10놋트 동양무궁화아파트 7동 511호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6	п	II	ш		김순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8-8	김옥묵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8-29	가등 기	2387512388 70144/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7	п	II	11		김인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94-25				5820823680 672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8	п	II	11		김일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87 강촌마을 311동 503호				4365617760 50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9	П	II	ш		김자순	부산 북구 화명동 348-1				1324237387 3528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20	П	II	Ш		김자순	부산 북구 화명동 348-1				5602542792 64680/1069 5763513234 8000 (지분)
2-21	п	п	н		김정식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시장로22번 길 5, 808호(거제동, 희망센트럴뷰)				5602542792 646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22	П	п	11		김정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76 번길 38, 303동 1301호(두호동, 창포3차아이파크)				3628919763 41895/ 1069576351 32348000 (지분)
2-23	п	п	П		김진희	부산 북구 모라동 685-6				7014887926 90686/ 1069576351 32348000 (지분)
2-24	II	11	11		김진희	부산 북구 모라동 658-6				2735945919 54684/ 1069576351 32348000 (지분)

2-25	п	II	11	김춘자	경남 사천군 곤양면 송전리 285	2407586573 85246/ 1069576351 32348000 (지분)
2-26	п	п	п	김현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69번길 11, 에이동 1702호(양정동, 양정롯데갤러리움 아파트)	5458756616 46315/ 1069576351 32348000 (지분)
2-27	п	П	ш	문영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186번길 60-3(괴정동)	1273305180 147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28	п	II	=	문윤효	창원시 사림동 96-12	1202880823 96482/ 1069576351 32348000 (지분)
2-29	П	II	Ш	문은숙	창원시 사림동 96-12	1202880823 96482/ 1069576351 32348000 (지분)
2-30	п	II	=	박동휘	인천 북구 일신동 106-14	1358192192 156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31	п	11	ш	박삼태	부산 북구 감전동 143-16 ㈜부산새벽청과시 장 1-6호	7014930367 0446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32	п	11	ш	박상율	부산 북구 모라동 1360-1	2619370656 3024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33	п	11	ш	박수자	부산 북구 감전동 143-16 주식회사 부산새벽청과시장 2-45호	2737388884 230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34	п	11	=	박애진	부산 연제구 연산동 2141-17	1824077120 0652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35	п	II	=	박영휘	서울 성동구 구의동 555-5	1358192192 156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36	п	II	=	박옥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74-9	9960700327 57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37	п	11	II	박운용	부산 북구 모라동 1346-6	2217964038 43014/ 1069576351 32348000 (지분)
2-38	п	11	II	박종호	창원시 반림동 4-1 현대아파트 213동 607호	1262636537 90274/ 1069576351 32348000 (지분)
2-39	п	II	II	박지균	부산 사상구 모라동 656-16	2805293104 61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40	п	П	11		박창휘	충북 청주시 가경동 481	서대전 세무서		압류	1358192192 156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11	п	11				서울보 증보험 주식회 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청주지점)	가압 류	
	п	и	П				서울보 증보험 주식회 사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중부지역 본부대전 채권관리 팀)	가압 류	
	п	п	11				기술신 용보증 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 가 17-7(대 전지점)	가압 류	
	II	п	Ш				주식회 사정리 금융공 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 류	
	11	п	11				한국자 산관리 공사	서울특별 시 강남구 역삼동 814(충북 지사)	가압 류	
2-41	п	11	п		배덕숙	부산 사하구 신평동 253				1222372972 94112/ 1069576351 32348000 (지분)
2-42	п	п	п		배종계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5-10				1332620325 03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43	п	11	п		백선우	부산 북구 구포동 857-3 벽산그린필드 1차아파트 102동 102호				2182808880 252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44	11	п	п		백인우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0 대우마리나아파트 203동 1202호				2182808880 252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45	11	11	II		백정임	서울 도봉구 번동 442- 1 한성빌라 309호				2737388884 230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46	п	П	II		손봉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3690-1				5668364726 0352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47	П	П	II		손철호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495-9 무궁화아파트 103동 502호				1400524545 42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48	П	П	ш		송현숙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794 당감주공아파트 306- 304				5611901853 49794/ 1069576351 32348000 (지분)

2-49	п	II	II		신석권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70-1 서면한신아파트 104-702				3365213999 6475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50	П	II	11		안외점	부산 북구 모라동 656-30				9447274543 392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51	П	II	п		오영옥	부산 사상구 주례동 산120-18 제일타워 1506				9804902581 93446/ 1069576351 32348000 (지분)
2-52	п	П	11		우외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96-5				7015354768 422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53	п	п	п		원극순	부산 서구 토성동1가 6-1				2350717255 65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54	П	II	п		유인철	부산 북구 모라동 830-5				5822786897 9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55	п	п	п		윤갑순	부산 강서구 대저2동 1989				5196000998 8656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56	п	п	п		윤경숙	부산 북구 만덕동 253-6	한국자 산관리 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부산 지사채권 추심2팀)	가압 류	6790960960 78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배금자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서진기아 타운 시이동 606호	가처 분	
2-57	п	П	11		윤경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312번길 3, 101호 (가야동,자연빌라)				1273305180 147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58	п	П	11		윤광필	부산 북구 화명동 352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59	П	II	п		윤근수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277				3055932432 352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60	п	п	п		윤기봉	부산 북구 화명동 266				1402943633 2711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61	п	II	П		윤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99 동마아파트 1005호				5720930567 352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62	п	II	П		윤대영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16번길 3 (화명동)				1421914374 84096/ 1069576351 32348000 (지분)

2-63	п	П	П	윤대운	부산 북구 화명동 348-1	7639831080 882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64	п	П	п	윤동근	미합중국인 뉴욕주 오숀사이드시카렐 부루버드 3876	4365617760 50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65	п	п	н	윤동윤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 83 한강맨션아파트 24동 106호	5820823680 672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66	п	п	п	윤동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197	1455205920 16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67	п	П	11	윤명자	부산 동구 범일동 832-7	1455205920 16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68	п	п	п	윤무웅	여천시 선원동 1100	4107017009 37528/ 1069576351 32348000 (지분)
2-69	п	П	п	윤분희	구미시 송정동 38-4	3778909817 356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70	П	п	П	윤상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35, 105-203 (우동,해운대자이 아파트)	5093220720 58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71	п	п	п	윤상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46, 4- 1605 (괴정동,신익타운 아파트)	5093220720 58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72	п	11	п	윤상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290-1, 501호 (곡반정동)	5093220720 58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73	п	П	п	윤상진	부산 강서구 대저1동 3690-1	5668364726 0352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74	п	п	11	윤상후	서울 강서구 목동 737-6	1047748262 520960/315 0 (지분)
2-75	п	П	11	윤성덕	서울 은평구 구산동 100-5	1026754252 34382/ 1069576351 32348000 (지분)
2-76	п	П	11	윤성철	서울 은평구 구산동 100-5 지층 2호	1026754252 34382/ 1069576351 32348000 (지분)
2-77	п	п	11	윤수홍	부산 북구 화명동 388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		

2-78	п	11	11		윤순전	부산 사하구 당리동 133- 1				2037288288 2352/ 1069576351 32348000 (지분)
2-79	п	п	п		윤순혜	부산 남구 문현동 141- 27				1455205920 16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80	п	п	II		윤영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08-8	정태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 중일아파 트 시동 508호	근저 당권	4895086276 0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81	п	П	ш		윤영옥	경남 사천군 사교면 외구 12				5729873310 6615/ 1069576351 32348000 (지분)
2-82	п	II	11		윤영자	부산 부산진구 전포 2동 549-3				1273305180 147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83	п	II	п		윤영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518-6				2447543138 0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84	II	11	п		윤외선	부산 북구 만덕동 467				3055932432 352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85	п	11	п		윤용훈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2가 177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86	II	11	п		윤은갑	부산 동구 초량동 산5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87	п	II	11		윤은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46, 4-1605 (괴정동,신익타운 아파트)				1273305180 147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88	п	II	11		윤음전	부산 북구 화명동 1537				8149153152 9408/ 1069576351 32348000 (지분)
2-89	п	II	11		윤인미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580번길 13-2 (초량동)				1273305180 147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90	п	П	11		윤인선	부산 남구 민락동 129-3	부산진 세무서		압류	3055932432 352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Ш	II				북부산 세무서		압류	
	П	п	11				한국자 산관리 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신용 지원3부)	가압 류	

							주식회	서울	71.01	
	II	П	II				사정리 금융공 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 류	
2-91	11	п	П		윤정민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2번길 7, 101-1505 (거제동,삼익퓨처 타워)				5093220720 58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92	п	п	П		윤정숙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3, 208- 901 (용호동,엘지메트 로시티)				5093220720 58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93	п	II	п		윤정웅	부산시 동래구 망미동 799-3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94	п	II	П		윤정원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766번 길 11, 1104호(구포동, 이음골든브릿지)				5942090840 68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95	п	II	11		윤정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39-23				3055932432 352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96	п	II	П		윤정호	부산시 남구 수영동 457-2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97	п	II	11		윤주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5-14				5314665099 74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98	п	II	11		윤주득	서울 성동구 자양동 616-37				5314665099 74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99	п	П	11		윤주봉	부산 북구 화명동 409				5093220720 58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00	п	II	11		윤주섭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 634-11				1527966216 176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01	п	п	11		윤철문	부산 사하구 신평동 253	한국자 산관리 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채권추심 1팀	가압 류	1222372972 94112/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서울보 증보험 주식회 사	서울특별 시 종로구 연지동 136-74(부산신용 관리지원 단)	가압 류	
2-102	п	п	П		윤철수	부산 북구 덕천동 376 시영아파트 1-110				2291949324 2646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03	п	п	II		윤철재	부산 사하구 당리동 305-9	8149153152 9408//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04	п	II	п		윤철호	부산 사하구 신평동 253	8149153152 9408/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05	п	п	11		윤통갑	부산시 북구 화명동 280-3	1527966216 176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06	п	п	II		윤필선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080-211	3055932432 352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07	п	П	Ш		윤필수	부산 동래구 명장동 143-2 새동양아파트 309호	4365617760 50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08	п	п	п		윤필옥	경남 양산군 양산읍 중부동 604-2	3055932432 352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09	П	п	11		윤현화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35, 115동 1203호(대연동, 대연롯데캐슬레전 드)	5942090840 68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10	п	11	п		윤형석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 아파트 210동 502호	4365617760 50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11	п	п	п		윤형준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아파트 415동 503호	4365617760 50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12	п	п	п		윤호진	부산 강서구 대저1동 3690-1	3778909817 356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13	II	п	II		윤화선	부산 동래구 거제동 129-1 한양아파트 1-309	3055932432 3528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14	п	П	п		윤희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100-5 지층 2호	1026754252 34382/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15	п	11	II		윤희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170-1 화명동대림타운 405-2302	1018644144 117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16	п	II	11		윤희대	부산 북구 구포동 산37-21	9790172552 1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17	П	п	Ш		윤희두	부산 북구 화명동 1429-1 국일 에이동 106호	2666004572 55132/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18	11	11	п		윤희문	부산 북구 화명동 1543				1527966216 176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19	11	II	п		윤희문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170-1 화명동대림타운 201-1701				1527966216 176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20	11	II	п		윤희복	김해군 상동면 우계리 1081				4074576576 4704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21	11	11	п		윤희상	부산 영도구 신선동 3가 89-16				4107017009 37528/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22	11	II	п		윤희선	부산 북구 화명동 1531-7				4074576576 4704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23	11	11	п		윤희성	부산 동래구 수안동 106-1 반도보라 가동 213호				6790960960 78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24	П	II	п		윤희성	부산 동래구 수안동 106-1 반도보라맨션 가- 213				5093220720 58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25	п	II	п		윤희순	경남 김해군 가락면 죽동리 519				5729873310 6615/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26	II	II	п		윤희신	부산 북구 덕천동 483-2				3557205024 95358/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27	11	II	п		윤희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69-1	북부산 세무서		압류	1018644144 117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28	11	П	11				부산광 역시 북구	세무2과 세외수입 팀 성송은(압류남아 있음)	압류	
2-129	11	II	II		윤희종	부산시 부산진구 구포동 1009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30	п	п	II		윤희진	부산 북구 화명동 1538				9790172552 1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31	п	п	Ш		윤희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83, 101동 1503호(송죽동, 수원로얄팰리스)				1992999412 4040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32	11	11	П		윤희창	울산 남구 옥동 1386 도성아파트 9- 401호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33	п	п	П		윤희철	서울 은평구 구산동 100-5 지층 2호				1026754252 34382/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34	п	II	11		윤희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137번길 98(초읍동)				5093220720 58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35	п	II	п		윤희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67-5 화랑아파트 비동 407호				1018644144 117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36	11	11	п		윤희탁	부산 북구 덕천동 339- 37	주식회 사우리 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부산 지역센타)	가압 류	4074576576 4704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37	п	п	11		윤희환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 12	한국자 산관리 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창원 지사)	가압 류	6111864864 7056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38	п	П	П		윤희환	부산 북구 화명동 1429-1 국일아파트 106호	한국자 산관리 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창원 지사)	가압 류	1408588171 5906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39	П	II	11		이기석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76-9				7198059561 3927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40	п	II	11		이달막	창원시 사림동 96- 12				1804300015 87836/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41	п	II	11		이성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아파트 3동 203호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42	п	II	11		이영락	부산 금정구 두구동 303-1				5820823680 672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43	п	II	11		이은숙	마산시 합성동 205-7 동림 가동 508호				2805293104 61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44	п	II	11		이점순	영주시 적서동 185				9158638658 40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45	п	11	п		이춘옥	부산 금정구 남산동 4-1 청파파크맨션 204호				4365617760 50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46	П	II	II		임경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89, 1002호 , (범천동,동우주택)				1091404440 12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47	П	п	П		임미경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686-7 한주주택 가동 102호				1909957770 2205/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48	п	п	11	임미선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686-7 한주주택 가동 102호	1909957770 2205/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49	п	II	11	임봉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76, 103-2401 (기장우신네오빌)	1091404440 12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50	п	11	п	임상현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72, 104-1502 (사직동,사직삼환 나우빌)	3118298400 3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51	п	п	п	임석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686-7 한주주택 가동 102호	1909957770 2205/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52	п	11	п	임은옥	창원시 반림동 4-1 현대아파트 213동 607호	9820647873 036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53	П	11	11	임채삼	부산 북구 모라동 1346-6	2217964038 43014/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54	п	II	11	임채현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72, 104-1502 (사직동, 사직삼환나우빌)	3118298400 3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55	п	II	п	임한칠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성덕댐로 692	8417874000 31578/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56	п	п	п	임희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76, 2동 709호 (오금동, 대림아파트)	1091404440 12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57	П	II	11	장수홍	서울 강동구 명일동 309- 1 삼익아파트 201동 1218	5611901853 49794/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58	п	II	п	장효숙	포항시 창포동 611 두호주공2차아파 트 316동 501호	1309685328 1512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59	п	II	11	정명수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74-9	6641032753 5552/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60	п	II	11	정삼둘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5-10	1332620325 03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61	п	п	II	정숙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720	6382996716 09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62	п	II	11	정용오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38 보라빌라 7-104	6641032753 5552/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정일	우	부산 북구 모라동 862				9447274543 3920/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н	정일	우	부산 북구 금곡동 1108 주공아파트 412-1202				2037296372 07096/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정태	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 롯데아파트 101-2001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정혜	පි0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74- 9				6641032753 5552/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조문	පි0	부산 금정구 구서동 413-2 구서상가 예이- 103호				7014930367 04460/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지병	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524- 4				1803705853 950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진현	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21- 39				1527963791 025672/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최상	덕	부산 북구 주례동 964-9				1145883718 980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최상	덕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36, 103동 1403 호 (사직동,사직자이)				1145883718 980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최옥	두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209-3				3888747380 97846/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최재	우	부천시 중구 원종동 298-2 한산연립 3- 104호				9820647873 0360/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씨대 문중: 동빈:	천 휘 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66(화명동)				3055932432 3528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씨대· 종중· 동필	천 휘 사	부산 북구 화명동 385-1				1410430353 3936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표건	욱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191-5 신우빌라 301호				5611901853 49794/ 1069576351 32348000 (지분)
П	П	п	丑세	도	포항시 창포동 611 두호주공 2차아파트 316동 501호				1309685328 15120/ 1069576351 32348000 (지분)
				# # # # # 정일 # # # # # 정행 # # # # # * * * * * * * * * * * * * * *	변경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전 등	" " 정일우 무산 복구 관곡동 1108 주용이파트 1101~2001 " " 정태관 성설동 17 롯데아파트 101~2001 전태관 부산진구 연지동 174~9 보산 부산진구 연지동 174~9 보산 강서구 대치1동 2524~4 " " " 진현진 동대본구 이문동 321~39 " " * 최상덕 무산 복구 이문동 321~39 " " * 최상덕 무산 복구 964~9 보산 부산진구 104동 1403 호 (사직동,사직자이) " * 최사적 부산 부산진구 18대본구 이문동 321~39 * 보산 부산진구 18대본구 이문동 321~39 * 보산 복구 104동 104동 1048 1048 1048 1048 1048 1048 1048 1048	*	" " 정일우 무산 복구 1108 주된이마트 1412-1202	"

2-178	п	11	п			하복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72, 104-1502(사직동 ,사직삼환나우빌)				4677447600 5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79	п	11	п			하재석	부산 북구 감전동 143- 16 주식회사 부산새벽청과시장 2-45호				2737388884 230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80	п	11	п			황보근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194 봉암연립주택 9-105호				5276030603 42358/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81	II	п	II			황 보 준	부산 북구 덕천동 802 주공아파트 106동 806호				2805293104 614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82	II	п	н			황소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8-21 제201호				1402981829 395146/ 1069576351 32348000 (지분)
2-183	п	п	II			황유분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301동 804호(화명동 ,화명롯데개슬카 이저)				1273305180 14700/ 1069576351 32348000 (지분)
3	북구 화명동	산225-1 5		87	87	부산광 역시 북구					
4	북구 화명동	산225-1 6		221	221	평소종 은	부산시 북구 화명동 366				1/6 (지분)
4-1	П	II	II			대천풍 조	부산시 북구 화명동 388				1/6 (지분)
4-2	п	п	II			파평윤 씨대천 문중휘 동빈사 종회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366				2/6 (지분)
4-3	П	п	11			윤미혜	부산시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712-403	최판권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98-7	근저 당권	2/6 (지분)
	계				564.0	564.0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1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2. 개정이유
- 건설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대금지급은 정해진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 필요
- 3. 주요내용
- 조항 삭제 ▷ 조례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3조(평가 관리)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10월 10일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 기재 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접수처: 북구청장(참조: 재무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 이메일: <u>kim0405@korea.kr</u>
 - 전 화: 051-309-4142(Fax : 051-309-4149)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삭 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	
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평가 관리)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삭 제>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화번호 :

T21101 1110	찬 성	여 부		7.1	
조례안 내용	찬성 반대		의	견	비고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1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 정비
- 3.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
- 인용 제명 및 약칭 정비(안 제1조, 안 제5조 ~ 제8조)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 기재 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접수처: 북구청장(참조: 재무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 이메일: kim0405@korea.kr

- 전 화: 051-309-4142(Fax : 051-309-4149)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22조제1항"을 "훈령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22조 제2항"을 "훈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로 한다.

제10조 중 "규칙 제133조"를 "훈령 제10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개정규칙 또는 「부산광역시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u>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단체 예산</u> <u>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 위임) ③ 「 <u>지방자치</u>	제1조(목적) <u>「지방자치단체</u> <u>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 제5조(재무관의 직무 위임) ③ <u>「지방자치단체</u>
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따라 본청은 총무국장 또는 재무과장(경리업무담당 주사 포함), 의회 사무국 및 제1관서는 지출원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 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생 략) ③ 규칙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르며 이에 해당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u>훈령 제12조제1항</u>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u>제97조</u>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	
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분입출납원의 계산) <u>규칙 제133조</u> 에	제10조(분입출납원의 계산) ① 훈령 제103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은</u> 다음	
각 호와 같다.	<u></u>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세출월계표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u>규칙 제135조제1항</u> 및 제2항에 따라 출납	훈령 제105조제1항
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대리규	
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포네한 네이	찬성	반대	7	딘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10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3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6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2023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6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과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제1조)
-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내 법령 인용규정 현행화(안 제2조 ~ 안 제4조)
- 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표시 관련 조례 규정 정비(안 제5조 ~ 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우편번호 46504)
 - 2) 연락처 : 전화 051-309-4036, 팩스 051-309-4019, 전자우편 ykh3239@korea.kr
- ※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부.
 - 2. 의견제출서 1부. 끝.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 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4조"를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만 19세에서 만"을 "19세에서"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만 7세 이상 만"을 "7세 이상"으로 한다.

제8조(「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9조(「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10조(「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만 19세"을 "19세"으로 한다.

제11조(「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13조(「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4조(「부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5조(「부산광역시 북구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45세"를 "45세"로 한다.

제16조(「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 ⑤ (생 략)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제2조제5호의 정책연구용역의	<u><</u> 삭 제>
결과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과	
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	
연구용역의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행정 효율과 협업</u>	제1조(목적) <u>「행정업무의 운영</u>
<u>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u> 에서	<u>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u>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기준 등) ①
"구청장"이라 한다)은 <u>「행정 효율과 협업</u>	「행정업무의
<u>촉진에 관한 규정」</u> (이하 "영"이라 한다)	<u>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력단절여성등의</u>	제1조(목적) <u>「여성의 경제활동</u>
<u>경제활동 촉진법」</u> 에 따라 부산광역시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u>「경력단절</u>	제5조(시행계획 등) ① <u>「여성의</u>
<u>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 (이하"법"이라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한다) <u>제4조</u> 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u>같은</u>	<u>제5조</u>
<u>법 제5조</u> 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u>같은 법 제6조</u>
따라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등) ①・② (생 략)	제17조(구성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3
경우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청년("청년"이란 <u>만 19세에서 만</u> 35세	
까지를 말한다), 가정주부, 장애인 각 2명	<u>19세에서</u>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①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②
른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u>만 19세</u>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9세
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	
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	
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	
로 선정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어린이 생활체육의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	제25조의2(어린이 생활체육의 지원)
람 또는 초등학생인 사람을 말한다)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생 략)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②
당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	
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만65세</u> 이상 고령자	9. <u>65세</u>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u>만 19세</u> 미만인 사람을 말	1 <u>19세</u>
한다. 다만, <u>만 19세</u> 가 되는 해의 1월 1	<u>19세</u>
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10조(「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2
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u>만 19세</u> 미	
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	19세
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	
를 말한다.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	2
나 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u>만 19세</u>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19세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	
려하여 심사・선정한다.	

제11조(「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이 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2조(정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만 65세</u> 이상의 사	
람을 말한다.	<u>세</u>

제12조(「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제2조(정의)
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이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	2
주하는 <u>만65세</u>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u>65세</u>

제13조(「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2조(정의)
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	1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만 65세</u>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5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2조(정의)
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	1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u>만 12세</u>	
이하 아동을 말한다.	<u>12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5조(「부산광역시 북구 갱년기 증후군 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	제2조(적용범위)
상자에게 적용한다.	
1.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란 갱년기 증상	1
을 겪고 있는 <u>만 45세</u> 부터 60세까지의	<u>45세</u>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2조(정의)
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초로기 치매"란 <u>만 60세</u> 미만에서 발병	4 <u>60세</u>
한 치매를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 ① 구청장은 부산광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 ①
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1. <u>만 60세</u> 이상 구민	1. <u>60세</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고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108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2023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5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2023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5개 규칙」을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과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규칙 내 법령·자치법규 인용규정 정비(안 제1조 ~ 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우편번호 46504)
 - 2) 연락처 : 전화 051-309-4036, 팩스 051-309-4019,

전자우편 ykh3239@korea.kr

- ※ 이 일괄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1부.
 - 2. 의견제출서 1부. 끝.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mark>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mark>"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mark>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mark>」"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28조제2항</u> 각 호의 사항을	제11조(구성) ① <u>제28조제1항</u>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u><삭 제></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조(「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제1조(목적)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u>제10조제2항</u> 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u>관한 규정」제10조제2항</u>
사업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u>「지방공무원 징계 및</u>
<u>제1조의2제1호</u> 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u>	제1조(목적) <u>「민원 처리에 관한</u>
<u>법률 시행령」제10조</u> 의 규정에 의하여	<u>법률 시행령」제12조</u>
부산광역시북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제증명 민원사무중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현장민원실(이하 "현장	
민원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처리요령) ① ~ ④ (생 략)	제5조(업무처리요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현장민원실에 신청한 증명민원서류를	<u> </u>
15일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u>제15조</u> 의 규정에 의거 내부적으로 종결	<u>제25조</u>
(폐기)처리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준용) 소하천 점, 사용료 부과, 징수에	제8조(준용)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준용한다.	<u>기본 조례 시행규칙</u>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	일팔개성규식인
-----------------------------------------------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고